

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1994.11.19, 1995.3.2, 1997.3.17>

(앞면)

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① 성명(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)		②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기번호)	
	③ 본적			
	④ 주소	(전화번호 :)		
⑤ 종 별		☐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☐ 자동차운송주선업(일반, 이사)		
⑥ 주사무소의 소재지				
⑦ 주영업소의 소재지				
⑧ 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				
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☐ 특별시장 ☐ 광역시장 ☐ 도 ☐ 지 ☐ 사 귀하				
구비서류				수 수 료
1. 사업계획서 1부 2. 임원의 성명 ·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(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3.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) 각 1부 4.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5.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(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) 1부 6.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(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) 1부				16,000원

33331-24011민

210mm×297mm

'97.1.28. 승인

(신문용지 54g/m²)

※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: 생략